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18

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: 박정훈·고동진·박상웅

진종오 · 김장겸 · 김재섭

조은희 • 박정하 • 안상훈

조지연 · 배현진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 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 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,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9제2항·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9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모바일콘텐 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다)에 모바일콘 텐츠 등을 등록・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라 한다)의"를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"로 한다.

-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다)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해당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
- 1.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
- 2. 제1호 이외에 웹 탐색기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방식
- ③ 앱 마켓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른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모바

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은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이어야 한다.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1호"를 "제12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"를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2조의9제 2항제2호에 따른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제22조의9제2항 제2호에 따른 결제방식의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| 제22조의9(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       |
| 및 실태조사) ① (생 략)    | 및 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②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다)에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서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중개할 때 해당 앱 마켓에서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・판매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식을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이용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야 한다.</u>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1. 앱 마켓사업자가 제공하는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앱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제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하는 방식</u>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2. 제1호 이외에 웹 탐색기 등</u> |
|                    |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을 결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제하는 방식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③ 앱 마켓사업자가 제2항제1          |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(이하 "앱 마켓"이라 한다)에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·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(이하 "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"라 한다)의 보호 등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50조(금지행위) ① 전기통신사 업자(제9호부터 <u>제11호</u>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 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"금지 행위"라 한다)를 하거나 다른

| 호에 따른 결제방식과 관련하 |
|-----------------|
| 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 |
| 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등 |
| 경제적 이익은 공정하고 타당 |
| 한 수준이어야 한다.     |
| <u>4</u>        |
| 모바일콘            |
| 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제50조(금지행위) ①    |
| <u>제12호</u>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

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 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

10. ·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·③ (생 략)

| 1. ~ 8. (현행과 같음)  |
|-------------------|
| 9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
| 모바일콘텐츠 등          |
|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제22   |
| 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결제  |
| 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   |
| 행위                |
| 10.・11. (현행과 같음)  |
| 12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 |
| 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제22조  |
| 의9제2항제2호에 따른 결제방  |
| 식의 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   |

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하

는 행위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